

「별지」 제3호」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- 사 업 명 : IP Human Link 사이트 구축 보안 솔루션 도입 및 설치
(개인정보보호 솔루션(웹필터) 추가라이선스 구매건)
- 발주기관(갑) : 한국발명진흥회
-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(주)지란지교소프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해당물품명)에 대하여 “갑”은 발주자로서 “을”은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위 물품 중 “을”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“을”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는 금액 (7,700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을”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을”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12년 09월 17일

“갑” 한국발명진흥회장 (인)

“을” (주)지란지교소프트 대표이사 (인)

